아동기본법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59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백선희·강경숙·황운하

김준형 · 서왕진 · 이해민

서미화 · 서영석 · 김재원

김선민 • 전진숙 • 위성곤

박은정 • 정춘생 • 맹성규

차규근 • 손명수 • 윤준병

신장식 · 이수진 · 권향엽

김 유 • 전종덕 • 이학영

의원(24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 법률은 교육·복지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며 아동 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에 대한 법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

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아동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5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환경, 보호자의 양육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아동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

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
- 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신체적·정 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 폭 력, 학대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견해를 표 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안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 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하여 아동권리옹 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45조).
- 자.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아동기본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온전한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하여 성장·발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 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동은 항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3.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4.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5.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생·생존할 권리를 가지며,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아동의 권리) 아동은 생존·보호·발달·참여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 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책무) ①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 ② 기업은 사업 및 사회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영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공급망 및 협력업체의 경영 과정에서도 아동권리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기업은 법률로 허용된 아동노동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①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아동(이하 "특별보호아동"이라 한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 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아동정책의 총괄·조정)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 제1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재원조달방안
 -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15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익 증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3.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5.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6.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 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2. 개인정보 보호위원장·경찰청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식품의약 품안전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3. 아동대표 남. 여 각 1인
- 4.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이 중 2인은아동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아동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이 처한 환경과 상태, 보호자와 양육, 교육, 발달 등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역할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 여 이를 아동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을 위한 아동 관련 데이터를 통합 적으로 수집·구축 및 관리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2. 제12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3. 제15조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 4. 제17조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5.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22조제6항 각호의 업무
 -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 연구
 -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 원
-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의 권리 보장

- 제19조(생명과 건강의 권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출생등록될 권리) 아동은 출생 후 가능한 신속히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생존을 위한 권리) ①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생존에 필 요하고 적절한 의식주와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수준의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이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한다.
- 제22조(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 ① 아동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은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료, 사회서비스 등 을 받을 수 있다.

- ③ 아동은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 제23조(부모를 알 권리)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 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5조(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 방임, 착취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②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 ③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침해 및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며 필요시 개입하여야 한다.
- 제26조(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입양은 공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입양대상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과 차별받지 아니하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서비스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돌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하게 보호·양육되고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을 지며, 양육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8조(경제활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동은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과 휴식 등 기타 권리에 지장을 주는 과도하거나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아동의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는 불합리하게 상속된 채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30조(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① 아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② 아동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가는 아동의 잊혀질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 아동은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제32조(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제3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인격을 존중받으며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보호자와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

-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4조(쉴 권리와 놀 권리) ① 아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발달특성에 맞는 놀이 활동 및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건전한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5조(환경에 관한 권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각자 능력과 소양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 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인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존· 발달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아동이 권리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아동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6조(참여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개인이 가지는 신체·정서·경제 ·문화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② 보호자는 모든 아동이 합리적 의사결정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사를 발달단계에 따라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아동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구성원은 기관운영, 창의적 활동 등에 대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참여의식을 고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 등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된 정책의형성·집행·평가 또는 쟁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아동도 차별 없이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 제37조(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동은 의사결정 및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고,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수단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표현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 거나 사회윤리 및 공공질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글, 그림, 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를 가진다.

- ②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존중하고 아동이 매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9조(자유로운 출입의 권리) 아동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출 입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사법 및 행정 절차 등에서의 권리) ① 아동은 사법절차에서 의사 표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성숙도에따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② 형사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법률대리인,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인 등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범죄 등에 연루된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1조(체벌 금지)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양육, 보호, 교육 등

- 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42조(중독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알코올, 약물, 도박, 스마트폰 등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3조(보호대상 아동 등의 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아동 및 그 밖에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 및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직업훈 런, 주거, 자산 형성,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자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권리구제

- 제44조(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정서적 건강, 진로 지도 등을 위하여 연령별로 적합한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5조(아동권리옹호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 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둔다.
 -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아동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 시정 등 개선안 권고
 -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요구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옹호관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6조(친권의 제한 등) ① 국가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 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소재불명, 면접교섭의 지속적 거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 아동의 복리를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 제도 등이 적절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아동에게 후견을 통해 적절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아동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47조(진정) ①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
- 제3조(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 제18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아동기본법」 제13조"로 한다. 제15조제10항 중 "보장원"을 "「아동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5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③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아동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을 "「아동기본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본법」 제18조"로, "같은 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본법」 제18조"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법」 제48조에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본법」 제18조"로, "같은 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를 "「아동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 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본 법」 제18조"로 한다.

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을 "「아동기본법」 제15조"로 한다.

①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를 "「아동기본법」 제18조"로 한다.